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32353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3235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6. 12 선고 2002나6206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AA외 2인)

【피고, 상고인】 기BABA보증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정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6. 12. 선고 2002나620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은,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특약란에 기재된 ‘본 보증서에 의한 할인어음대상 어음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 간에 경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용역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배서양도 및 인수포함)된 상업어음에 한함’이라는 문구의 취지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수반하여 ‘발행’한 어음을 수취하여 할인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배서양도’ 자체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 ‘배서양도’ 받은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에도 이를 상업어음으로 취급하여 신용보증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판례위반 또는 계약불이행시의 책임귀속이나 어음법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